

2025년 쌀 생산량(예상량)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

통계청 강릉사무소에서는 「2025년 쌀 생산량(예상량)조사」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. 8. 21.
통계청 강릉사무소장

1.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

지역	구분	인원	계약 방법	계약 기간		수당	비 고
강릉사무소	도급조사원	1명	도급 계약	2025. 9. 9.-10. 16.	기간 중 6일	80,240원	쌀 생산량(예상량) 조사 기간 중 담당 공무원보조
	도급조사원	1명	도급 계약	2025. 9. 9.-10. 16.	기간 중 7일	80,240원	
속초분소	도급조사원	1명	도급 계약	2025. 9. 9.-10. 16.	기간 중 8일	80,240원	
삼척분소	도급조사원	1명	도급 계약	2025. 9. 9.-10. 16.	기간 중 8일	80,240원	

- 도급조사원은 담당 업무량에 따라 일수 및 수당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담당업무를 중도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차등지급
- ※ 도급조사원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필수(비용 본인부담)이며 도급계약 방식으로 주휴 및 연차 수당 없음

2.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담당업무
도급조사원 (도급계약)	· 지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업무 지원 · 현장조사 논벼 수확 후 운반 및 현미 조제 보조

3. 선발방법

□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- 평점(서류)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4. 응시 자격요건

- ‘코로나 19’ 비(非)감염자, 의심증상(발열 37.5℃, 호흡곤란) 비(非) 발현자
-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
-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(도급조사원 제외)
-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-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- 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
5. 심사일정

- 서류전형심사: 2025. 9. 2.(화) 10:00 예정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9. 4.(목) 12:00 이후
 - 통계청 채용정보 (<http://kostat.go.kr/ijob>) 공지사항에 공고
 - ※ 상기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6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5. 8. 21.(목) ~ 2025. 8. 28.(목) 18:00까지
 ※ 마감일(8. 28.) 18: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
- 접수처(문의처)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전화번호
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	엄정수	강릉시 화부산로40번길 49(교동) (농어업통계팀)	tel : 033-640-3937 fax : 033-655-5103
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속초분소	성운룡	속초시 청초호반로 211(교동)	tel : 033-639-6820 fax : 033-633-2221
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삼척분소	정혜미	삼척시 남양길 41-92(남양동)	tel : 033-570-5313 fax : 033-574-2862

- 접수방법: 방문, 팩스 접수를 원칙으로 함
 - 방문접수: 평일 09:00 ~ 18:00(토, 일, 공휴일 제외)
 -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
7. 제출서류

- 자기소개서 1부(붙임서식 참조, 필수)
- 응시원서 1부(붙임서식 참조)

<해당자 추가 제출서류>
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1부(도급조사원 최종합격자에 한함)
-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

-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) 제외
- ※ 필요 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추가 가능
- 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- 관련서류 제출기한: 2025. 8. 21.(목) ~ 2025. 8. 28.(목) 18:00까지

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-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“미흡”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.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.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,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금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.
-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
 - ① 계약서 작성 전(교육 미이수): 계약금 전액 미지급
 - ② 계약서 작성 후(교육 이수): 교육 금액만 지급
 - ③ 조사수행 중: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

【붙임1】 도급조사원 응시원서

2025년 쌀 생산량(예산량)조사 도급조사원 응시원서

업무명	2025년 쌀 생산량(예산량)조사		분야	도급조사원	응시번호	
성명 (한글)			성별			
			생년월일			
연락처	핸드폰번호	() -				
	주소	(도로명주소) (지번주소)				
	e-mail					
일반 경력사항	기간	근무처	담당업무 내용			
	~					
	~					
통계청 경력사항	기간	근무처	담당업무 내용			
	~					
	~					
자격사항	구분	자격증명	등록번호	취득일자	시행처	
	전산 관련					
	기타					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					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 2025년 월 일 성명 : (서명)						

주 1」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모집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2」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모집이 취소될 수 있음

붙임 : 관련 증명서류(저소득층 및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자격증 등)

【붙임2】 도급조사원 자기소개서

2025년 쌀 생산량(예산량)조사 지원 자기소개서

업무명	2025년 쌀 생산량(예산량)조사	지원 부서		응시 번호	
<p>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 (과거 경력관련 내용 등) - 과거 경력, 일반경력(지자체 통계조사 경력 등) 등을 자유롭게 작성</p> <p>(지원동기 및 포부 등) - 지원동기 및 포부, 통계청 조사관련 표창 및 체험수기 제출 내역 등을 자유롭게 작성</p>					

【붙임5】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에서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